

◎산림청고시 제2023-113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4일

산림청장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산지 지정해제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경기도	남양주시	양수024	NJ52-9-13-024	준보전산지
경기도	하남시	성동088	NJ52-9-12-088	준보전산지
경기도	화성시	대부040	NJ52-9-24-040	준보전산지
경기도	화성시	대부050	NJ52-9-24-050	준보전산지
충청북도	옥천군	보은092	NJ52-13-21-092	준보전산지
충청남도	서천군	서천031	NJ52-13-24-031	준보전산지
충청남도	서천군	서천034	NJ52-13-24-034	준보전산지
경상남도	밀양시	밀양012	NI52-2-19-012	준보전산지
제주특별자치도	서귀포시	서귀068	NI52-9-24-068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